

[별표 1] 인권침해 유형

침해 유형	세부 침해 형태
인격권 침해	폭언, 모욕적 언사, 혐오적 발언, 명예훼손 등
학업권 침해	사적 심부름, 학사 상 권한 남용, 자퇴 강요 등
연구권 침해	실험 및 연구시설 이용 방해, 연구 지도의 부당한 거부, 연구주제의 강제변경, 연구성과물에 대한 권리 침해 등
신체적 침해	신체에 대한 폭력(폭행) 등
근로권 침해	보건휴가 불허, 직무상 괴롭힘, 부당한 결재 거부 등
재산권 침해	인건비 반납 강요, 논문 심사 사례비 요구, 기타 부당한 명목의 금전 및 물품의 요구 등
교수권 침해	수업·지도 권한 침해 등
기타	위 세부 침해 형태와 다르나, 규정 제2조 1호에 정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

위원 기피 신청서

☐ 소 속:

☐ 성 명:

기피 위원명	기 피 사 유

※ 기피 위원이 없는 경우 ‘해당 없음’으로 기재 요망

인권위원회 구성 현황(첨부)을 통보 받고, 위와 같이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1 . . .

성명: (서명)

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

사건 신고서

접수 일자	
접수 담당자	

1. 신고인이 당사자인 경우

이름		성별	남 ☐ 여 ☐	분류	대학생 ☐ 대학원생 ☐ 강사 ☐ 직원 ☐ 교원 ☐ 외부인 ☐ 기타 ☐
소속			학번(직번)		
연락처			전자우편		
주소					

2. 신고인이 제 3자인 경우

피 해 자	이름		성별	남 ☐ 여 ☐	분류	
	소속			학번(직번)		
	연락처			전자우편		
	주소					
신 고 인	관계	친구 ☐ 선·후배 ☐ 지도교수 ☐ 동료 ☐ 상사 ☐ 기타 ☐			신고접수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 였습니까? 예 ☐ 아니오 ☐	
	연락처					

3. 피신고인

이름		성별	남 ☐ 여 ☐	분류	대학생 ☐ 대학원생 ☐ 강사 ☐ 직원 ☐ 교원 ☐ 외부인 ☐ 기타 ☐
소속			학번(직번)		
연락처			전자우편		
주소			신고인과의 관계	동기 ☐ 선배 ☐ 후배 ☐ 지도교수 ☐ 동료 ☐ 상사 ☐ 부하 ☐ 기타 ☐ 모르는 사람 ☐ 이성친구 ☐	

4. 피해유형(해당 사항 모두 적시)

인격권 침해 ☐ 학습권 침해 ☐ 연구권 침해 ☐ 신체적 침해 ☐
근로권 침해 ☐ 재산권 침해 ☐ 교수권 침해 ☐ 차별 행위 ☐
성폭력 ☐ 성희롱 ☐ 기타 ☐

5. 피해발생 횟수 및 기간

발생횟수 : 일회성 ☐ 반복성 ☐

최초 발생일 :

최근 발생일 :

6. 피해발생에 대해 신고인이 취한 반응 및 행동(해당란에 모두 표시)

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 ☐

말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☐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☐

제3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함 ☐ 변호사 ☐ 경찰의 도움을 구함 ☐

기타(구체적으로) :

7.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신고자의 행동의 변화

증지 ☐ 감소 ☐ 변화없음 ☐ 증가 ☐ 기타

8. 희망 조치 사항(중복 체크 가능)

규정에 따른 처벌 ☐ 사과 및 중재 ☐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☐ 공간분리 ☐

9. 기타 하고 싶은 말

신고인 은(는) 년 월 일 자로 신고하며, 성균관대학교
관련 제 규정에 따른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.

신고인

(인/서명)

인권센터장 귀하